

제439회 국회 (정기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조세소위원회)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10월1일(목)

장 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0)
2. 조세법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1)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0)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8)
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93)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5)
7.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5)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25)

상정된 안건

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0) 3
2. 조세법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1) 3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0) 8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8) 12
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93) 14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5) 15
7.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5) 21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25) 26

(10시02분 개의)

○소위원장 오기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3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위원입니다.

오늘 22대 국회 후반기 조세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조세정책이 우리 국민 경제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하므로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 중의 하나입니다. 세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별 제도의 필요성·효과뿐만 아니라 납세자,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 조세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여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같이 앉으신 좌석 순서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윤후덕 위원입니다.

꼭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국민들께 더 좋은 일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종욱 위원** 이종욱입니다.

조세소위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참 굉장히 힘든 소위인데 올해도 뜨거운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건설적인 그런 결과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다음은 존경하는 문진석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문진석 위원** 문진석입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다음은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상훈 위원** 반갑습니다. 안상훈입니다.

성실하게 국민 편익만 보고 꼼꼼하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환 위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춘석 위원** 저는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소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보좌관들이 꼭 해야 한다고 했는데 조세소위로 배치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괜히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법사위를 한 12년 있었는데 전부 다 법체계만 검토하다 보니까 다 읽어 보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적하면 와 가지고 계속 ‘자꾸 판지 거네’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눈 감기도 그렇고 말하기도 그렇고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

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준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준 위원 김남준입니다.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 진행은 상정한 안전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가 완료된 안전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재정경제부제1차관이 공식인 관계로 오늘 회의는 조만희 세제실장이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0)

2. 조세법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1)

(10시06분)

○소위원장 오기형 의사일정 제1항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조세법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먼저 소위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과 2항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첫 페이지 목차를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다섯 가지의 법률안은 이른바 정부의 경제형별 합리화 방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률안들로서 경미한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수단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또 민간 경제활동의 과도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 5건의 법률안이 모두 그러한 목적하에서 발의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인지세법과 조세법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이러한 취지에 따라 조세법 처벌법상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에 인지세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의 현황 부분을 보시면 인지세 납부 방식이 예전에 소인된 인지를 첨부하는 그런 방식에서 2014년부터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서 과세문건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재사용하는 경우 현행 조세법 처벌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러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인지세법에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2페이지 하단의 검토의견에서 보시듯이 이에 대해 찬성

하는 측은 인지세 납부의무가 단순·명확한 경미한 행위로서 행정질서별로 전환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또 건당 인지세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만으로도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며 또 과태료 상한을 현행 벌금액과 동일한 액수로 설정하였다는 점 등을 찬성 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재사용은 출력된 전자수입인지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위조에 준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인지 제도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덧붙이면 뒤에 나오는 나머지 3건의 법률안들은 전부 다 과태료 전환 대상이 되는 형벌이 모두 벌금형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것에 비해 비교적 엄한 형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그러면 세제실장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동의합니다.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 수준에 비해서 과도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해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형벌은 복잡한 절차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에 비해서 처벌의 가능성이 제한적인 반면 과태료는 신속한 상시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토론 시간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 오기형 예.

○이춘석 위원 김영환 위원님이 대표발의했지요?

○김영환 위원 예.

○이춘석 위원 죄송합니다.

○김영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춘석 위원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수석전문위원의 보충의견이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뒷부분은 사실 고의였냐 과실이나 하는 것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과실범의 경우에는 다 형사처벌을 과태료 돌리겠다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이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전자수입인지 재사용의 경우는, 사실 명백히 이건 고의범이거든요. 형사적으로 처벌하자고 하면 유죄에 해당되는 죄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정할 때 벌금으로 하면서도 또 중하게 징역형까지 했는데 이것을 다 과태료로 돌려 버리면 고의범까지도 과태료로 돌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사법 체계상 저는 완전히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의범은 과태료로 돌린 경우에 형사법 체계상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고의범의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그 대신 과하다고 생각하면 뒤에 있는 징역형, 그것은 과하니까 그 정도로 삭제하고 그냥 벌금 2000만 원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뒤에 과실범의 경우에는 과태료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만. 그게 사실은 법체계상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요?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쭙보려고요.

세제실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붙이는 인지는 다 없어졌어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지금 전체 100% 다 전자로 바뀌었습니까?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종이로 붙이는 것을 폐지하고요. 이것으로 다 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또 다른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원래 인지제도 이게 행정적인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그렇기도 하지만……

○김영환 위원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제가 보니까 형사처벌 사례가 벌금 딱 100만 원 1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처벌만 높였지 실제 민간에서 운용되고 있는 사례는 그래도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조에 의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부분도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배임이나 횡령, 경제사범들처럼 이런 게 아니고 단순한 행정절차상의 의도를 가지고 위조했다 하더라도 지난 10년간 딱 1건입니다, 1건.

그래서 이게 처벌수위만 높았지 실제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행 제도들을 운용하는 데 과도한 형사적 처벌만 높였지 실제 운영되는 사례는 크게 이 개정된 법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춘석 위원 저는 위반 사례가 1건 있다, 그게 이것을 과태료로 돌려야 한다는 논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벌금형과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 그러니까 재사용을 않게 되는 것이지 사실은 이게 가벼운 과태료로 간다고 하면 몽땅 사용해서 안 걸려 버리면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수입인지는 지금은 다 전자문서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관리를 화폐에 준하게 합니다. 사실은 국가의 수입이거든요. 화폐가 국가의 공신력으로 발행하는 것처럼 수입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엄청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라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건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 이것은 편의성을 위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모르겠네, 이게 검토가……

○소위원장 오기형 그러면 세제실장님 이야기 한 번 더 듣고 그다음에 이렇게……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에 보면 공문서위조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지를 위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형법상의 인지위조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 아니냐, 그래서 조세법 처벌법 과세 처벌하지 않더라도 형법상으로 인지위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인지세액이 최대 35만 원입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전자로 하면서 재사용 방지장치를 해 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를 들면 복사방지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놔 가지고 재사용이 쉽지는 않은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여러 가지 논거가 다 나와 있는데 오늘은 결정하지 말고 보류하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안도걸 위원 공통적인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예, 말씀하시지요.

○윤후덕 위원 잠깐만요. 자료 2페이지 보면 정부가 2025년 9월부터 경제형별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형별이 아닌 과태료를 한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런 토론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이게 포함된 거지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렇게 토론해서?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론할 때 법무부라든지 같이 토론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안도걸 위원 지금 기존의 형사처벌 과태료 전환하는 이거잖아요? 나름대로 다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 필요성에 입각해서 할 텐데, 저는 과태료 바꾸는데 과태료의 상한이랄까요, 그 기준, 그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 어떻게, 과태료를 책정했던 기준이랄까 이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 주실래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과태료를 전환하게 되면 인지세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검토안은 재사용 인지액의 5배와 100만 원 중 큰 금액 이런 식으로 규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지세액이 35만이 최대 금액인데 최대 그것의 한 5배 수준 정도, 그런 식으로 규정할 생각입니다.

○안도걸 위원 5배?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예.

○안도걸 위원 그러면 여기 상한이 2000만 원이지만 5배로 하면 통상 50만 원에서 35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한 200만 원 정도에 그치는 겁니까? 그러면 굳이 이렇게 괴리가 큰 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한은 2000만 원으로 했지만 실제 지금 적용은 맥시멈 되는 35만 원의 5배,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못 되잖아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예.

○안도걸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갭을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형식적인 것 아닌가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그래서 저희들이 벌금이 20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 상한을 둔 거고요.

○이춘석 위원 수입인지가 고가수입인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지금 한도가 35만 원이니까 100만 원짜리가 나온다 하게 되면……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체크한 게 35만 원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1건당 35만 원인데요. 여러 건이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건, 100건을 할 수 있고 여러 건이 걸리면 합산해서……

○**안도걸 위원** 합산해서.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합산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안도걸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기간을 정해서 거기서 통산해서 한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개별 건이 아니고?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그러니까 적발했을 때 여건이 나면 여건을 합산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게 되는 그런……

○**안도걸 위원** 좀 이상한데.

○**소위원장 오기형**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궁금해서 묻는데 정부의 과태료 금액지침 기준에 따르면 과태료 상한액의 30%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600만 원인데 그러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침과의 별도의 규정이나 이런 것을 또 만드실 거라는 얘기입니까?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예, 시행령으로 할 생각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법제처에 보면 과태료 금액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지침에 보면 상한액의 30%를 최소한 부과하라는 건데, 예를 들면 2000만 원이면 600만 원이 부과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로 인지세 납부액이 최대 35만 원인데 그거에 비하면 17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말하자면 지침보다 우위에 있는 시행령을 포함해서 뭔가 좀 통일성이 있기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아마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각 상임위별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모든 상임위가 다 비슷한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개별 제안, 자체 법안에 대해서는 개별 상임위별로 별도 검토할 쟁점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흐름에서는 경제형벌 합리화를 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서 특히 위조에 준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 위조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상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행법을 이렇게 바꾸더라도 종래에 있는 다른 형법상 규정, 공문서 위조에 대한 규정에서 해석이 되느냐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오늘 지금 설명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더 그 지점을 숙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정부에서 설명하신 재사용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또는 과태료를 통해서 경제적인 억제효과가 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된 건데 아까 공문서 위조와의 관계 부분은 같이 개별적으로 검토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류하고 다음에 한번 논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춘석 위원** 어차피 다 한번 보류가 되면 그쪽도 할 테니까 법무법인이나 검토를 받아 보세요.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제실장이.

만일 우리가 1000원짜리, 5만 원짜리 복사해 갖고 사용해서 걸리면 사실은 그것 똑같

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자수입인지기 때문에 별것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행정처벌로 돌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법적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면 이 자체는 명백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태로 위조한 것은 엄하게 처벌하는데 그냥 전자문서로 만드는 것은 가볍게 처벌해도 되는 행정질서벌로 가자? 이걸 그래서 제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법적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갖고 오세요, 그러면 공식적인 의견을.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그다음에 김남준 위원님 마지막 발언……

○김남준 위원 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는 또 한 축은 저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적 처벌이 현실세계에서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느냐, 형사적 처벌보다는 경제적 처벌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적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좀 줄여 나가자, 법률 위반을 줄여 나가자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는 아까 이춘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징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벌금에 상응하는 수준을 조금 더 높여서 경각심을 더 갖게 하는 방안들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윤후덕 위원님 말씀하시려고,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이런거 할 때 보면 이렇게 원칙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보면 몇백 건을 어떻게 형벌 해서 과태료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대상은 법무부나 이런 데서 정부 전체는 검토 안 했다는 거지요?

이 꼭지가 들어 있습니까, 이 합리화 방안에?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그것 들어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들어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예.

○이종욱 위원 그러면 구조적으로 다 봤네요, 정부부처 내에서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일단 행정부 내에서는 검토가 됐다는 겁니까?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950)

(10시24분)

○소위원장 오기형 그러면 1항 안건은 잠시 보류하고 다음에 더 추가 쟁점 정리한 다음에 판단하기로 하고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소위 자료 6페이지를 보시듯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및 자료제출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동 위반사항의 처벌은 2022년 이후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개정안 역시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서 자료제출 의무 위반이 국민의 생명·안전과는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통상적으로는 과태료 처분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도 관세법 277조도 이미 그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정합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찬성 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면서 기존 벌금형에 비해 제재 상한금액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 점은 좀 민간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편의 취지와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은 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당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97년부터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다는 점 등은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다음 세제실장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동의합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불응은 그 자체로 국가재정을 침해하는 행위라기보다는 협력의무 위반이므로 행정질서벌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 관세법의 개정 등 타법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의원발의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저는 한 가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 관세법에 있는 263조, 266조 이런 거는 사실상 관세당국 입장에서 하는 그런 행위인 반면에 지금 여기 특례법 20조는 환급에 대한 거잖아요. 관세 등의 환급,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국민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고, 관세당국에서는 어떤 의무를 지는 내용인데 서로 공수가 바뀐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단순히 이쪽에서 5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올리는 거는 저는 하여튼 아닌 것 같고, 필요하면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만 하고 금액은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정부 측 의견 어떠십니까?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그런데 저희들이 타법하고 보면, 국세기본법에 보면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게 되면 이것도 벌금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

을 5000만 원 과태료로 전환한 사례가 있고요.

또 외국환거래법도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가지고 요구한 자료를 거부했을 때, 그때도 그 당시에 벌금 1000만 원인데 이걸 과태료 5000만 원으로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법 사례를 좀 감안하면 이것도 같이 동일하게 과태료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합리화 차원에서 과태료로 한다는 것에는 저는 뭐 이견이 없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세환급에 관련된 건데 다른 관세법상 서류제출 보고 의무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서 관세화하고 형벌을 합리화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이 5000만 원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논리적인 정합성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말씀을 드리면 이게 1000만 원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97년에 1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또 올려야 되고, 말씀드렸던 이거는 관세환급과 관련되지만 이것도 관세청장이 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안 한 케이스고 그다음에 관세법도 마찬가지로, 물론 환급은 아니지만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한 거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답변하는 게 굉장히 명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금액만 가지고 하면 이게 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벌금하고 과태료의 중한 것의 차이는 알겠는데 금액도 좀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정확한 얘기를 해 줘야 이걸 마무리하겠네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예, 추가로 말씀을……

○이춘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 아니에요? 그냥 쉽게 설명을 하세요.

아니, 97년도면 30년 지났잖아. 화폐가치로 따져봐도 그렇게 되는 거고, 사실은 벌금에 의해서 과태료 하는 것은 사람들을 다 형사처벌의 피의자로 만들고 전과자로 만들게 하니까 그 대상이 아닌 과태료로 처벌하자, 그렇게 하면 벌금형을 과태료로 할 때는 엄청나게 사실은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력을 동원하려고 하면 과태료가 벌금보다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올라가야 돼요. 이미 벌금에도 과태료 들어가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을 면하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는 올려줘야, 실제로 위반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많이 부를 수 있어, 그러니까 위반하면 안 돼’ 하기 때문에 과태료 올라가면 통상적으로 올려야 맞는 거고, 사실은 이게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용될 때 이게 사실은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을 정했기 때문에, 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한 이삼백만 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일단 들을 때 ‘너네 5000만 원까지 부과시킬 수 있어’ 하니까, 사실은 그것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한 거지.

그래서 저는 이게 만일 상한선의 규정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사항이 백번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은 그 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을 실질적으로 시

키냐가 중요한 것이지. 법규정상 어떻게 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000만 원 상한이고요. 저희들이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에서 부과기준을 또 새로 만들 텐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위반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렇게 해 가지고 차수별로 금액을 좀 달리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1차 위반했을 때는 1000만 원, 4차 이상 위반했을 때는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세분화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다 과세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우리 법사위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조세위원회에서 토론하니까 참 많이 듣네요.

그런데 국민들 감정이 ‘이것 5000만 원?’ 그러면 5000만 원을 나중에 가서 100만 원으로 부과할 거잖아요. 그 5000만 원이 부담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만 원이잖아요. 그 기간 사이에, 그 대상인 국민은 사실은 불안한 거지요. 불안해.

그런데 애초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를 왜 5000만 원이라고 법에다 이렇게 적시를 해 놔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위원님, 100만 원이 아니고 1차 위반했을 때 1000만 원입니다.

○**이춘석 위원** 여러 차례 위반할 경우 말이지요.

○**윤후덕 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가능한한 낮춰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형 때리는 식으로 공갈 구형 때리고, 선거 때는 무죄도 나올 수도 있고 조금만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법감정이 좀 달라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그래서 아까 이춘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형벌이 행정 질서별로 대체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억제력이 좀 감소되는 측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서 과태료로 전환하면서 금액을 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그래서 논의를 정리를 잠깐 하고 또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차원에서 벌금을 과태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대부분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다만 그 금액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하는 게 적절하냐 아니면 중간지대 어느 지점을 제안할 수 있는가, 이 지점을 지금 논쟁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따로 검토하신 것은 없지요?

혹시 유사 입법례를 보면서, 제도의 정합성 때문에 비슷한 기준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준 사례를 좀 제안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윤후덕 위원** 그래요. 그럼시다.

○**소위원장 오기형**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게 환급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똑같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데 어떤 거는 과태료 금액이 높고 낮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오래 전의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가치를 보면 어느 정도 상향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토대로 해서 그 금액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더 다음 단계에서 사례를 제안하고 판단하시면 어떨까요?

안상훈 위원님.

○안상훈 위원 사전에 검토하면서 조금 의아해 했던 부분이 지금 논의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형벌에서도 양형기준이라는 게 어떤 죄목에는 몇 년, 얼마 이런 게 그래도 국민들이 합리적이다 받아들이는 기준이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경제질서별로 바꾼다고 시스템 개편을 할 때도 앞에 우리가 다뤘던 인지라든지 여러 가지들의 경중을 조금 놓고 그런 표준적인 과태료 기준을 그러니까 건별로, 법안별로 하지 말고 좀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법이나 국세기본법, 외국환거래법에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5000만 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래 전에, 1000만 원이 97년에 된 거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봐서 5000만 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그런데 시스템을 바꾸는 거면 오히려 경제질서 위반에 대한 그것들을 모아서 그 경중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차체에 무슨 틀을 만드는 게 국민들 받아들이기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확보하는 길 아니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다 따로 돼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은 1000만 원, 5000만 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앞에 나왔던 인지 같은 경우에 사람에 따라서 이게 더 센 것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건별로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이것 좀 반영을 해서, 일단 과태료 바뀌는 것은 공감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1000만 원에서 올리는 것은 공감이지만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 안 사례를 다음 보고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8)

(10시36분)

○소위원장 오기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소위자료 10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용도세율 또는 관세 면제 적용 물품의 해당 용도 외 사용 및 양도 등 과실로 인한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현행법에서 처하도록 돼 있는 것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고 또 이와 함께 다른 법률의 제재 수준에 맞추어 용도세율 적용 물품의 세관장 신청의무 위반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은 500만 원인데 이를 2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11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듯이 과태료 전환 대상 위반행위의 처벌 건수는 2022년 이후 17건이고, 1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과태료 수준의 조정은 관세법 277조의 과태료 수준과 맞춰 통일하려는 것으로서 관계법률 간 정합성 제고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형벌의 과태료 전환은 단순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합리화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면서 제재금액 상한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논의하신 법률안과 동일한 논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세제실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동의합니다.

국민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미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법령 간 행정제재의 형평성을 위해서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관세법 수준으로 하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좀 헛갈리는데요. 앞에서 5000만 원 이야기하다가 여기는 갑자기 또 1000만 원, 200만 원으로 떨어지니까 기준이 뭔가…… 이것 기준을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제실장님?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여기 보시면 이게 과실입니다. 앞쪽에는 협력의무 위반과 관련된 거고 이것은 고의가 아니고 과실인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벌금 수준도 낮고 그리고 과태료로 전환하면서 전환금액도 한 1000만 원 정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0만 원은 관세법에 보면 여러 가지 과태료 수준이 있는데 비슷한 게 물품의 운송·보관이나 통관 질서 의무 위반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과태료가 한 1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 과실에 해당되는 것은 1000만 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뒤에는 다 과실일 경우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고의나 과실이냐가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해요. 살인죄로 의율하고 싶은데 증거가 좀 부족하면 과실치사로 가서…… 이런 식이거든. 그러면 이 고의와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고의로 처벌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고 다 과실로 가게 돼 있어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고의와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과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고의다, 이것은 과실이다 누가 판단해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과세 당국에서 판단합니다.

○이춘석 위원 과세 당국에서? 그러면 나는 고의 부분은 하나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 다 과실로 갈 거거든, 과태료로. 그 기준이 있어야 할 거거든요. 적어도 고의와 과

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예를 들면 FTA 관세특례를 적용받으려고 하시겠지만 문서를 조작했다든지 부정이나 허위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하면 고의라고 해서……

○이춘석 위원 그러니까 중대하고 명백할 때는 고의로 가는 거고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과실로 가는 거고……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했든지 이런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후덕 위원 증거가 부족하면 과실이고 증거가 있으면 고의고 그렇게 되네요.

○소위원장 오기형 또 위원님들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윤후덕 위원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위원 실장님,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벌금으로 300만 원이었는데 과태료로 내면 1000만 원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과태료는 벌금보다 더 뛰어야 된다는 그런 행정상의 원칙이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일반적으로 벌금이 되면 전과가 남고 해서……

○배준영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게 어떤 원칙이 있나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원칙은 일반적으로 제재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배준영 위원 그런 관행인가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다음에 보고할 때 화폐가치 한번 따져 보시지요. 97년도에 제정됐으니 그때 300만 원이면 현재의 가치로 따질 때, 어차피 벌금도 사실은 바뀌야 맞는 건데, 그런 경우 지금 가치로 따지면 얼마가 해당되는지 이것도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김영환 위원 모든 법에 물가상승률 다 해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춘석 위원 현실화 조치를 하긴 해야 돼요.

○소위원장 오기형 전체적으로 이 법안도 과태료로 바꾸는 것에 대한 공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서서 했던 것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한 5배 정도에 대한 논쟁이 있고 여기는 지금 한 3배 정도인데 이 정도는 원안으로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리 일정 시간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간사님이 잠깐 요청을 하셔서, 11시부터 한 30분 정도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시간을 안내드립니다.

다음 건 하겠습니다.

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93)

(10시43분)

○소위원장 오기형 의사일정 제5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17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신고작성 자료의 증거서류 보관 의무 등을 과실로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18페이지의 현황을 보시면 현행법은 이런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되 과실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전환 대상 위반행위의 처벌 건수는 2022년 이후 9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과실로 인한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합리화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금액이 과태료로 전환하면서 올라가는 것은 동일한 논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그러면 정부 세제실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동의합니다.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 형법원칙, 조세 관련 타 입법례 등을 감안하면 과실로 인한 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세 감면 물품 사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추징을 통해 감면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개정안의 형벌 폐지 관련 의무들을 위반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그다음에 법령 준수도가 높은 측면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토론 순서인데 의견 어떠신지요?

○이춘석 위원 그것도 앞엿것하고 똑같아요.

○소위원장 오기형 예, 앞엿것 사항하고 거의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5)

(10시46분)

○소위원장 오기형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22페이지에서 보시듯이 국세청장의 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행정지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23페이지에서 보시듯이 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인 세무플랫폼은 전자적 방식으로 자

료를 수집·정리·계산하여 환급 절차를 보조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무플랫폼 운영 과정상 오류로 인한 신고지연 문제라든지 자료 취득 과정에서 국세행정 포털시스템을 과도하게 이용해서 시스템의 과부하가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납세자 피해의 사전적 예방 및 안정적 세정 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6페이지에서 보시듯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전산장애 같은 경우 전산시스템의 기술적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이 있고, 아울러 주무관서인 국세청의 입장은 아직 명확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재경부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그러면 세제실장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의원안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는데 단지 몇 가지에 대해서는 대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일반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상의 세무플랫폼에 대한 행정지도 규정을 따로 도입하는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게 있고요. 다만 세정 당국의 납세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상징적 의미는 있다는 측면에서 도입은 검토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도입할 경우에도 개정안은 대상이나 행정지도 내용·방식, 구체적인 규정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행정지도 내용은 행정지도의 목적상 열거보다는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든지 행정지도 방식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보다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저는 이 법이 사실은 사후적 구제체도로 운영됐던 것을 사전적 구제체도로 바꾸겠다 하는 법의 취지상 아주 좋은 취지 같거든요. 그런데 재경부가 반대의견을 하는데 저는 재경부가 반대의견 하는 것에 대해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행정절차법이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모든 행정절차에 다 적용시키는 일반법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법으로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에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드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고요. 특별법에도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논거는 안 맞고.

그런데 저는 이게 행정지도 절차에서 아니고 그냥 지침이나 이것들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일응 일리가 있지만 사실은 법으로 명확히 해 놔 버리면 법적 강제력이 더 세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재정경제부의 논거가 좀 약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국민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필요하고 좋은 법이지 않겠냐 하는 판단이 드는데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그래서 대신에, 의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하지는 않는 측면이 있지만 이것을 조금 저희들이……

○**이춘석 위원** 수정안을 내든가, 그러면.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이것을 조문이나, 그러니까 세무플랫폼의 정의를 여기에 하고 있는데 이게 세법상의 용어가 아니라서 조문 수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용에도 국세기본법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정지도하라는 방식이,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그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근거를 두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세부적인 행정지도 방식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법무부에 보면 대한변협하고 법무플랫폼,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 행정내규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구체적인 행정지도 방식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춘석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이 낸 법안이니까 위원장실하고 좀 논의를 하지요. 왜 그러냐면 법 내용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약간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논의를 해서 같이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또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이종욱 위원**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오기형** 예.

○**이종욱 위원** 저는 법 내용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세정 당국에서 이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세법의 제도적인 허점을 찾아서 그것을 어떤 영업 방법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정부에서 시장의 어떤 발전 방향을 규제하는 그런 거고 국민적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많은 세무플랫폼이 나와 가지고 현행……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좋지요, 제도의 허점을 찾아 주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밖에서 찾아 주니까.

그런데 그것을 세무공무원이, 세정 당국이 이것을 규제하고 지도하겠나? 아니, 지도를 당할 사람이 뭘 지도를 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방향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스크래핑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스크래핑을 막을 거예요? 자신 있으면 막으세요.

그래서 이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유 민주, 우리 시스템에 반대되는 방향이다, 저는 기본 입장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접근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최근에 세무플랫폼 관련해서 경정청구나 불복 건수 관련해서 현황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운영상에 정보를 잘못 제공하거나 혹은 세무 처리를 잘못해서 이런 혼선들이 벌어지는 건수들, 시장 현황들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조승래 위원장님은 그런 것들을 좀 염려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플랫폼 회사들의……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들의 자율성을 막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 혼란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측면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 기간에 홈택스가 과부화가 걸려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기

한에 신고를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불편이 엄청 야기가 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려고 국세청과 세무플랫폼 간의 행정지도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다른 측면이고.

전자시스템 과부하 문제는 국세청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세무플랫폼의 문제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원천적으로 세무플랫폼의 과부하 문제를 국가가 서버 관리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회복시켜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세무플랫폼 자체의 어떤 오류나 과장광고나 혹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국세청으로 실제 왔는데 실제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사람들의 손해들이 발생한 그런 불복청구, 경정청구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여쭙보고 있는 겁니다.

○**재정경제부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세청 자료를 보면 전체 경정청구 건수와 세무플랫폼을 활용한 추정 건수는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25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1년에 경정청구가 한 15만 건 중에서 한 88만 건 정도가 세무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전체 경정청구가 150만 건 그리고 그중에서 세무플랫폼을 활용한 게 88만 건 정도 그렇게……

○**김영환 위원** 그러면 반절이 넘네요?

○**재정경제부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예, 그렇게 국세청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게 과장광고라든지 그런 것하고 연계된 수치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존재하는 게 조세 행정 서비스를 더 받는 측면이 있는 거네요?

○**김영환 위원** 받는 측면도 있고……

○**문진석 위원** 아니, 어쨌든 놓치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뭔가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니까.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도 맞으시고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들이 과장광고라든지 오인광고를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문진석 위원** 그것은 다른 법으로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맞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통과시킨 세무사법에서 그 규율을 해 가지고 처벌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승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 중에 여기 보면 과장된 광고의 정보 제공 금지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세무사법에서 작년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열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문 정리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환 위원** 조금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이하…… 그러니까 아까 지침 얘기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해요.

○**문진석 위원** 국세기본법에 이것을 규정하게 되면 플랫폼 서비스 이것을 완전히 공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세 당국에서는, 국세청에서는 반대하는 건가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이게 지금 국세청에서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재정경제부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일단은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무플랫폼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규제, 그러니까 납세자들 보호를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측면은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 방식 자체를 갖다가 행정지도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춘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 법을 보니까 81조의20의 규정을 그대로 한 번 더 읽어 보시면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무처리지원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이것 등을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엔트로픽이나 오픈AI에서 하다 보니까 안정성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런 플랫폼들이 마음대로 다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세청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아까 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이게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 동의해.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동의해. 그런데 거기에 등을 붙여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등을 붙여 놔 가지고 지도가 무한대로 확대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로 확장시키지 말고 진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능성이 있는 몇 개를 특정해서 그 경우에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양쪽이 서로 우려하는 것을 절충하는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저도……

○**소위원장 오기형**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이 법의 납세자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동감하고요. 훌륭한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정합성을 봐야 되는데 전산장애는 어떻게 보면 시기에 몰려서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국세청에서 좀 풀어야 될 근원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세기본법이라는 게 국세행정의 기본 원칙을 다루는 건데 특정 서비스 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포함하는 게 법체계상 맞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무사법이 있습니다. 세무사법에서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하고 이 법이 생기게 되면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이것을 따져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업체가 좀 많이 생겨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태계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자율성을 키운다는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23페이지를 보니까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세무플랫폼 삼점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과징금을 부과했다든지 이런 지

도·감독과 처벌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실익이 뭔가, 세제실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그러면 안도걸 위원님까지 말씀 듣고 시간상 그래서 중간에 정회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행정지도 근거조항 관련해 가지고요 두 가지지요.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이 분야는 현재 세무사법 등을 통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거지요.

그러면 첫 번째 남은 게 기술적 안정성 확보라는 건데 저는 기술적 안정성 확보라는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지원서비스 내용의 적정성이랄까 이런 것 아니겠어요? 허위 이런 부분이라든지 하는 경우인데 기술적 안정성 확보라는 것은 마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물적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암시하는 건가요? 그래서 아예 설립할 수 있는 요건들을 해서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건가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그것보다는 작년에 있었던 스크래핑이라고 그래 가지고 홈택스가 중단이 된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일시에 하는 그런 홈택스와 그것을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기술적 안정성 그런 측면을 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도걸 위원 기술적인 안정성?

○재정경제부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그래서 만약에 보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시간을 조금 나누어 가지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다든지,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행정지도하는 부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그러면 잠깐 여기까지 하고요. 배준영 간사님 요청이 있으셔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오기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아까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해서 제안을 드리면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입장이 있고 재정부에서 갖고 있는 입장이 있는데 행정지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점들의 쟁점들을 오히려 정부 측에서 대안을 정리한 다음에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예, 말씀하시지요.

○김영환 위원 제가 제출한 법안만 추후 논의하기로 돼 있는데 이춘석 위원님께서 과태료·벌금이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과태료 상한을 올리면 이춘석 위원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 이춘석 위원 내가 김영환 위원 때문에 해 주는 거예요. 사실 양심에는 반해요.
- 김영환 위원 과태료 어느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 이춘석 위원 5000.
- 김영환 위원 5000으로? 5000은 너무나 크지 않나요?
- 문진석 위원 3000 해요, 3000.
- 이춘석 위원 이것은 고의범이라니까, 과실범이 아니라.
- 소위원장 오기형 지금 의사일정 1항에 관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위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좀 더 요청하셨고 그래서 정리해 갖고……
- 이춘석 위원 재사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복사해서 쓴다는 것 아니야.
- 소위원장 오기형 그러니까 정리해 갖고, 한꺼번에 정리하시지요.
- 이춘석 위원 어차피 뒤에 있는 과태료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상향도.
- 김영환 위원 그때 할 때 같이 하시지요.
- 소위원장 오기형 1항·2항을 같이 해서 다음에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시지요.
- 김영환 위원 다음에 언제요?
- 소위원장 오기형 최대한 빨리해야지요.

7.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5)

(11시36분)

- 소위원장 오기형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의사일정 제7항의 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28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수출입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체계적·종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국가의 통관애로 해소 등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며 통관애로 접수 및 발굴·처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그 밖에 통관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별도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관세청은 그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 제정안에 대해서는 수출입 기업의 통관·물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유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별도의 법률 제정 여부를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조문별로 간략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항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1번,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은 제정안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정의 규정에서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주체를 세관 당국이 아닌 정부로 수정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32페이지 2번, 국가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모든 국가의 책무를 수출입 기업의 통관 관련 애로 해소 및 구제를 위한 시책 추진 의무와 국내외 통관제도 개선 및 통관절차 합리화를 통한 수출입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노력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해서 이 법에 대해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에서는 이렇게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또 법률제명은 특별법으로 돼 있어서 약간 조응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함에 따라 기존의 관세법과 유사한 규정이 있을 경우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은 검토가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34페이지 4번,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통관애로 해소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5페이지 4번, 지원의 기본원칙 및 지원활동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정안의 지원활동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게 돼 있고 또 그에 필요한 사항까지 포괄될 수 있어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5번, 통관애로 해소 요청·발굴 및 처리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관애로 기업의 애로 해소 요청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세청이 이를 접수하거나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통관애로를 해소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조사와 필요시 관계부처 이첩 및 협조 또 국제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통관애로 기업의 요청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다소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권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런 권리를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또 기업의 요청이 많고 이에 따른 행정 부담은 늘 수 있다는 점은 또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45페이지 6번, 세관 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세관 당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고 또 세관 당국 간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주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48페이지 7번, 지원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지원활동 수행을 할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및 관계기관 등 참여로 구성된 협의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원업무의 체계적 수행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조직을 이렇게 법률에 근거를 두면 또 조직 및 예산의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조직의 활용 가능성, 업무량, 소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0페이지 8번, 실태조사, 자료제출·조사 등에 관한 제정안은 관세청장의 실태조사와 수출입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통관

해소를 위한 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51페이지에서 보시듯이 12조 1항 후단은 또 2항의 실태조사 방법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52페이지 9번, 관계부처 등의 협조, 과세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고 또 과세정보를 해외 세관 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기관 간 협조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계기관 협조를 의무화하는 만큼 요청 대상과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또 과세정보 제공이 관세법상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에 해당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5조 후단에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10번, 비밀유지 의무,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실태조사·지원활동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세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에 대한 위임·위탁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효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또 위임·위탁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다음, 정부 측 세제실장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이 원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단순 행정 지원, 국가 간의 협력으로서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할지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입법이 필요한 경우는 재정 지원 근거 도입이라든지 별도 기관 설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현행 관세법도 통관절차에 대한 국제협력사항 등을 규정 중에 있고 필요하다면 근거 규정이 없어서 집행 애로가 있는 경우에 관세법 규정을 보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세정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세법상 과세정보는 비밀 유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관세법과 세관상호지원협정보다 더 크게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여기 관세청에서 누가 오셨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요? 아니, 관세청 이야기를 좀 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세제실 이야기만 들어서 안 되고요.

하여튼 뭔가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지금 펼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현재 어떤 제도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좀 분명히 마련해 달라는

것 같은데 관세청 의견을 들어 보고 난 연후에 판단을 해야 되지 싶은데요.

○이춘석 위원 저도 한말씀만.

○소위원장 오기형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세제실장님, 재정경제부가 일을 잘 못하는가 봐. 아니, 국세청·관세청이 외청 아니에요, 재정경제부의? 그런데 우리는 다른 법을 막 내 갖고 해 달라고 하고 재정경제부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돼? 일을 잘 못하는 데다 법체계상……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딱 하나만 할게요. 내가 말 많이 한다고 아까 혼났어요, 위원들한테.

관세청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일반법이 뭐예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관세법이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관세법이 있지요? 일반법이지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예.

○이춘석 위원 이 법은 지금 세관행정 중에서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법 만능주의에 의해서 다 특별법으로 만 들어요. 그러면 기본법안이 다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쪽 보니까 관세법에 충분히 다 규율할 수 있는 걸 굳이 또 하나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세제실장 의견에 저는 100% 동의해요.

그래서 이 자체를 저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기본법안인 관세법안에다 담아서 장을 하나 설치한다든가 거기 장을 하나 해서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규정 해 가지고 쪽 정하면 되지 이걸 또 하나 법을 만들어요? 그거 동의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전혀.

그래서 그 부분은 관세청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법인 관세법 안에다 담는 것이 법체계상 저는 맞다라고…… 이게 새로운 걸 규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청의 일정 업무를 하나 기술하는 경우에 또 다른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 내에다가 그 업무를 추가하는 게 맞다. 그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한번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실장님, 관세법이 통관이나 관세 관련된 절차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지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게 아까 이춘석 위원님께서 기본법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해외에서 통관에 대한 어떤 보복, 애로 이런 문제들을 지금 관세법의 어떤 일반적인 관세·통관 절차의 규정에 담을 수가 있어요? 기업들의 권리구제 이런 것들인데 저는 조금 법체계가 다른 느낌이거든요. 이걸 기업 지원 목적이고 관세법은 일반적인 기본법적인 측면이고.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그런데 관세법이 기본법인데 관세에 관한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세법 9장 1절 6관에 보면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세청하고 재정경제부하고 협의를 잘 안 하셨어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협의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정태호 의원님이 굉장히 날카로우신 분인데 기업 애로 지원 관련돼서 이 법을 내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정경제부가 그동안 관세청하고 어떻게 협조를 하셨길래 이 특별법안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미리 장을 하나 만들어서 빨리 고치시지, 정부입법으로.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그래서 관세청하고 현재……

○김영환 위원 고치실 용의는 있으세요, 그러면?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근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집행에 애로가 있다, 특히 외국과의 통관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근거 규정이 없어서 집행에 애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세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걸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인 기업 지원의 하나의 형태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각자 보호주의의 영역에 세계 경제질서가 돌아가는데 이 관세 문제 때문에 기업들 애로들이 굉장히 커지고 리스크도 커지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수출 지원의 목적이기도 하고 이재명 정부의 어떤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 법안의 내용들을 수용하는 형태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의도는, 목적은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관세법을 장을 하나 별도로 마련해서 아까 이춘석 위원님 대안처럼 그렇게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그래서 규정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아니, 규정이 없어서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 특별법을 낸 제도 취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재정경제부에서 받아서 관세법을 수정하든 어떤든 기업 지원의 근거들을 제대로 만드는 게 필요하겠지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지금 관세청이 없으니까 세제실장님이 조금 말씀을 주세요,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국가의 책무 규정이거든요.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피해 구제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통관애로가 발생해서 수출기업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지연돼서 물품 딜리버리가 늦춰졌든지 그래서 영업에 애로를 먹었다든지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피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적인 측면에서의 피해 구제입니까, 이걸? 지금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걸 국가의 책무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 내용이 뭘까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이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게 아니고 해외에 수

출할 때 그쪽 관세 당국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든지 애로가 있다든지 이런 걸 해소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국제 분쟁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기구에 의해서나 절차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고 국가가 책무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그런 걸 하더라도 상대국에 대해서 통관의 애로를 해소해야 되는 의무가 국가에 생긴다 이거지요. 그런데 국가가 그걸 등한히 했다 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렇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상대는 요청 권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제대로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가, 관세청이 들어가 가지고 기업한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든요, 정보를. 지금 이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확히 국가의 역할은 뭐고 또 그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명쾌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선의로 지금 지원을 하겠다 이건 좋아요. 그렇게 본다면 또 그건 원래 애당초에 관세청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 법적인 권리·책무로 넘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뭔가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건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꼭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타의 방법으로 할 건지.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 법이 아니고 관세법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재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실상, 해결하고자 하는 실상이 뭔지 이것에 대한 규정부터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의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관세청의 입장을 정리하고 재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걸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안도걸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다음 회의는 관세청도 같이 출석하고 장을 하나 신설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건지를 정부 측에서 먼저 조율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관세청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25)

(11시56분)

○**소위원장 오기형**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 안건까지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의사일정 제8항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57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또 정부가 올해 초 시행령으로 감액한 공제액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법률에 규정하며 또 영세납세자 등에 대한 추가 공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58페이지와 59페이지 현황 및 연혁을 보시면 2024년 재작년에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이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부담을 고려해서 제도를 존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내 주셔서 그대로 존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결을 했는데 올해 2월에 정부가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공제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공제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국회의 입법적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그런 배경에서 제안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이 개정사항이 크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개정사항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동 제도가 납세협력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는 그런 취지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 대상이 납세협력비용 전반에 대해서 공제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전자신고에 한정해서 해 주는데 이런 납세협력비용이라는 명칭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신고를 통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으로 명칭을 고쳐야 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2페이지 공제액 환원 및 법률화에 대해서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공제 축소 조치를 했지만 당초 국회 심사 과정의 입법 의도에 따라서 법률에서 감액된 공제액을 다시 환원하여 규정을 하고 특히 공제금액을 기존 현행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법률로 명시해서 법률의 실질적인 규율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당초 주장했듯이 전자신고가 보편화되어서 과표양성화를 위한 조세유인 효과가 저하된 점, 따라서 그런 세부담 경감 목적 이외에는 조세특례로서의 의의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영세납세자 등에 대한 추가지원 근거 신설은 소득세·법인세를 전자신고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2만 원 이상을,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1만 원 이상의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추가 공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영세납세자는 세무 역량이 부족해서 신고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가 공제가 납세자의 부담 완화와 또 성실신고 유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세액공제보다는 모두채움이라든지 미리채움서비스 등 현행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다음은 세제실장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명칭 변경하고 관련해서 동 제도는 일부 전자신고에만 적용되나 납세협력비용은 모든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명칭 변경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 제도는 전자신고 조기 정착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2004년에 도입한 것으로써 납세협력비용 보전 취지가 아닙니다.

두 번째, 공제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서 정책 목표가 달성된 점을 감안해서 올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공제액을 축소했으므로 공제액을 환원한 다든지 추가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요 세목의 전자신고율이 99%를 상회해서 전자신고 활성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사한 시기에 전자신고 세제 지원을 도입한 주요 국도 모두 전자신고 세제 지원을 다 폐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세사업자에 대한 전자신고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국세청이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상향 입법과 관련해서는 공제액은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자신고 인프라가 계속 확충됨에 따라서 전자신고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제액은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입법례에서도, 현금영수증에 대한 과세특례에서도 공제율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위원님들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저는 위원장님한테 건의 사항 하나 있고 제 의견만 하나 내고 빨리 가겠습니다.

조세소위에서 하는 검토의견서 수석전문위원님이 쓰시는데 수석전문위원한테 분명하게 쓰시라고 하세요. 제가 사무총장 할 때 계속 얘기했거든요, 분명하게. 그런데 입장이 곤란하니까 빙빙빙빙 세 바퀴를 돌려, 도대체 이게…… 내가 뜻은 알겠어. 그런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발의한 사람들 눈치 다 보니까 빙빙빙빙 세 바퀴를 돌리니까 너무 머리 아파. 그래서 위원장님이 소신껏 쓰시라고 격려를 해 주시고 저도 사실 그렇게 써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제실장도 또 얘기를 하는데 빙빙빙빙 서너 바퀴를 돌려, 막 뭐도 못하고. 그것도 분명한 입장으로 해요. 이 법은 법체계상……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사실은 재정경제부가 개겨 가지고 너희 손 좀 봐야겠다고 올린 법 아닙니까? 2024년도에 다 논의가 끝난 것 아니야. 세액공제 폐지하겠다고 냈어. 왜 그러냐 하면 98%까지 갔으니까 더 필요없다고 내니까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왜 폐지해? 그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피해 가잖아. 폐지하지 마’ 그렇게 하니까 기재부가 열받으니까, 대통령령이니깐 다 폐지하면 욕 얻어먹으니까 반만 폐지하자, 2분의 1로 감축시킨 것 아니야. 그러니까 위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유지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법으로 올려 버리지’ 해 가지고 기존에 법체계상 대통령령에 있던 것을 법으로 올려 버린 거예요.

이 세액공제 액수를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법으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법으로 올라와야 돼요, 대통령령에 있는 것이. 그러면 법체계상 이 규정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인 것이냐 법으로 상향하는 게 합리적이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정태호 의원이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지만, 저는 이것은 법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기재부도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의원들이 이렇게 정해 주면 그대로 따라야지 대통령령은 내가 만드는 권한이 있다고 그것에 반해서 그렇게 확 바뀌 버려요? 재정부 태도도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저는 이걸 법체계상 논의가 필요하다. 이게 법으로 올릴 정도까지 되는 거냐, 그렇게 되면 날마다 이 법 저 법 바뀌야 돼요. 법체계상 저는 대통령령으로 놔두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또 위원님들 말씀하실 게 있으면……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제가 논의 과정에, 그 조세소위에 2년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님도 그렇고 정태호 간사님께서도 이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무리한 법을 왜 냈겠습니까? 재정부가 아무런 국회 존중 의사도 없고, 그때 조세소위에서 얘기했고 영세사업자들 보호를 위해서 이 납세협력비용에 대해서는 해 주자고 전체회의에서 장관까지도 그때 다 얘기를 한 사항인데 다시 들어 가지고 시행령으로 고쳐서 올라온 거잖아요, 실장님. 그러니까 이 두 간사님께서 조세소위 2년 하시면서 얼마나 분통하고 얼마나 재정부가 원망스러웠으면 1만 원 2만 원을 여기 담아서 법안을 올렸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정말 심각한 갈등의 상황까지 벌어진 법안이라고 봐요.

아니, 재정부가 시행령을 고칠 거면 양당 간사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사전 협의해서, 시행령 개정도 정부 국무회의 통과시켜서 그냥 바로 해 버리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 논의가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사님들하고 최소한 사전 협의는 했었어야 된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두 간사님이 1만 원 2만 원을 담아서 이 법안으로 올려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분통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법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재정부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같이 좀 협의해 가면서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 계획을 저는 듣고 싶어요.

○소위원장 오기형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같은 취지고요. 제 생각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한쪽 생각으로는 대통령령을 다시 바꾼다고 하면 봐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담보합니까? 지난번에 국회 소위에서 토론하고도 1년도 안 되고 시행령 개정 작업을 했잖아요. 그런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예외적으로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그냥 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아니,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한 거잖아요. 논의를 안 한 것은 대통령령에서 알아서 하시라고요. 알아서 하는데, 논의를 한 것은 지켜 줘야지요. 그런 점에서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법으로 개정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김영환 위원 법체계상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재정부가 어떻게 얘기할지 그게

중요한 건데……

○**안도걸 위원** 재경부 세제실장님, 작년에도 그 소위에 있었잖아요. 작년 소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습니까? 그걸 정확히 말씀을 주세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이게 논의된 것은 폐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축소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폐지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뜻을 받들어서 폐지는 하지 않되 전자신고가 워낙 활성화, 99% 이상 전자신고를 하니까 감면제도의 목적은 달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면제도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폐지하지는 않고 반만 줄여서 이렇게 시행령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부터 먼저 고치고 오세요. 화폐 양성화 다 됐잖아요. 그것은 안 고치면서 왜 영세사업자 이것을 건드리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배준영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목적이 완성됐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폐지한다기보다는 이게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 한 가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미래대응기금도 만들고 별의별 것을 해 가지고 다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글썄요 이게 그런 일관성에 있어서 맞나,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영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이런 조세지출을 특히 제가 불평등 관점에서 잘 보잖아요. 이런 조세지출은 영세사업자한테 도움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재정지출로 전환을 하는 것도 함께 고려를 했으면 저는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세사업자의 전자신고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모두채움 서비스라든지 미리체험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투입해서, 모두체험 서비스가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 채워 줘니다. 다 채워 주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되게 해 놔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많이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오기형** 위원님들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결정은 미루고 논의를 한 번 더 하세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으니까 정부에서도 위원님들 말씀을 토대로 해서 대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으로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제실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수석전문위원,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남준 김영환 문진석 배준영 안도걸 안상훈 오기형 윤후덕 이종욱 이춘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김건영

관세정책관 진승하

입시회의록